

**구미시용역과제사전심의위원회설치및운영조례중
개정조례안에대한수정안**

기 획 행 정 위 원 회

구미시용역과제사전심의위원회설치및운영조례중 개정조례안에대한수정안

의안 번호	
----------	--

제출일자 : 2005. 3.

제 출 자 : 기획행정위원회위원장

1. 수 정 이 유

- 위원회 구성과 전문가의 범위를 조정하여 좀더 심도있는 심의가 될 수있도록 하기 위함.

2. 주 요 골 자

- 구미시용역과제사전심의위원회설치및운영조례중개정조례안
제5조(구성) 제1항중 "위원장과 부위원장 각 1인을 포함하여 9인이내"를
"위원장과 부위원장 각 1인을 포함하여 **13인이내**"로 하고
제5조제3항 중 "위촉위원은 시의회의원 3명, 전문가 그리고 각종 용역에
관한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자 중에서"를
"위촉위원은 시의회의원 3명, **토목 · 건축 · 환경 · 전자통신 등 분야에 2년
이상 종사한 경력이 있는자 또는** 전문가 그리고 각종 용역에 관한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자 중에서"로 수정함.

구미시용역과제사전심의위원회설치및운영조례중 개정조례안에대한수정안

구미시용역과제사전심의위원회설치및운영조례중개정조례안에대하여 다음과 같이 수정한다.

제5조제1항 중 "위원장과 부위원장 각 1인을 포함하여 9인이내"를 "위원장과 부위원장 각 1인을 포함하여 13인이내"로 하고

제5조제3항 중 " 위촉위원은 시의회의원 3명, 전문가 그리고 각종 용역에 관한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자 중에서"를 "위촉위원은 시의회의원 3명, 토목, 건축, 환경, 전자통신 등 분야에 2년이상 종사한 경력이 있는자 또는 전문가 그리고 각종 용역에 관한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자 중에서"로 한다.

부 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